2023학년도 사랑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이리동북 교육과정 설명회

2023.

이 리 동 북 초 등 학 교

https://school.jbedu.kr/iridongbuk

목 차

Ⅰ. 학교현황 ····· 1

1. 연혁 개요 ····· 1
2. 직원현황 ····· 1
3. 학생현황 ····· 1
4. 시설현황 ····· 1

Ⅱ.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 2

1. 교육과정 운영 ····· 2
2.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금지) ····· 6
3. 참학력 신장을 위한 '초등성장평가제' 운영 ····· 8
4.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 9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 12
6. 교육환경 개선 및 주요 사업 실적 ····· 15

Ⅲ.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 16

1. 학교폭력의 정의 ····· 16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 16
3.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 16
4. 성비위 예방 ····· 19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 21

Ⅳ. 인권 교육 ····· 23

1. 인권과 인권교육 ····· 23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 23
3.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 24
4. 가정에서의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24
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 25

Ⅴ. 안전 교육 ····· 26

Ⅵ. 학생 출결 관련 규정 안내 ····· 27

Ⅶ.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 ····· 30

Ⅷ. 교권보호 ····· 32

Ⅰ. 학교 현황

1. 연혁 개요

년 월 일	개 요
1983. 8. 10.	이리동북국민학교 설립 인가 (24학급)
1983. 9. 1.	이리동북국민학교 개교 (16학급)
1983. 9. 9.	개교식 거행
1984. 3. 10.	병설유치원 개원 (1학급)
1993. 3. 1.	특수학급 설치 (1학급)
1996. 3. 1.	이리동북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2009. 3. 1.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 선정
2022. 3. 1.	제 16대 유옥엽 교장 부임
2023. 2. 10.	제39회 졸업(51명, 총 7,758명 졸업생 배출)
2023. 3. 1.	초등학교 12학급(개별반 2학급 포함)·유치원 1학급 편성

2. 교직원 현황

구분 / 성별	교장	교감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어강사	유치원교사	교육복지사	교무실무사	행정실장	주무관	기타	계
남	1	0	1	.	2	0	0	0	0	0	0	1	2	2	9
여	0	1	3	.	8	2	1	1	1	1	1	0	1	11	31
계	1	1	4	.	10	2	1	1	1	1	1	1	3	13	40

3. 학생 현황

학 년		1	2	3	4	5	6	개별학습실	계	유치원
학급수		2	2	2	2	2	2	(2)	14(2)	1
학생수	남	17	15	19	25	27	25	10	127	2
	여	20	18	17	29	26	24	2	135	5
	계	37	33	36	54	53	49	12	262	7

4. 시설 현황

구 분	건 평	체육장	교재원	계
면 적	2,841㎡	13,467㎡	325㎡	16,633㎡

구 분	교실	개별실	과학실	영어실	컴퓨터실	도서실	음악실	보건교육실	학생자치실	강당	보건실	교육복지실	복지상담실	방과후교실	방과후운영실	돌봄교실	식생활관	놀이활동실	체육활동실	수학체험실	조리실습실	수석교사실	유치원	연구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방송실	운영위원회실	학부모교실	상담실	숙직실	창고
수	12	2	1	1	1	1	1	1	1	1	1	1	1	6	1	3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분석결과	• 지속적인 노후 시설 정비로 시설 및 환경 개선
교육과정 반영요소	• 학급 수 감소에 따라 남는 교실을 교육연구실 및 특별실로 활용 • 비담임 교사 및 강사의 수업 공간을 마련

Ⅱ.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1. 교육과정 운영

가. 이리동북 교육목표 구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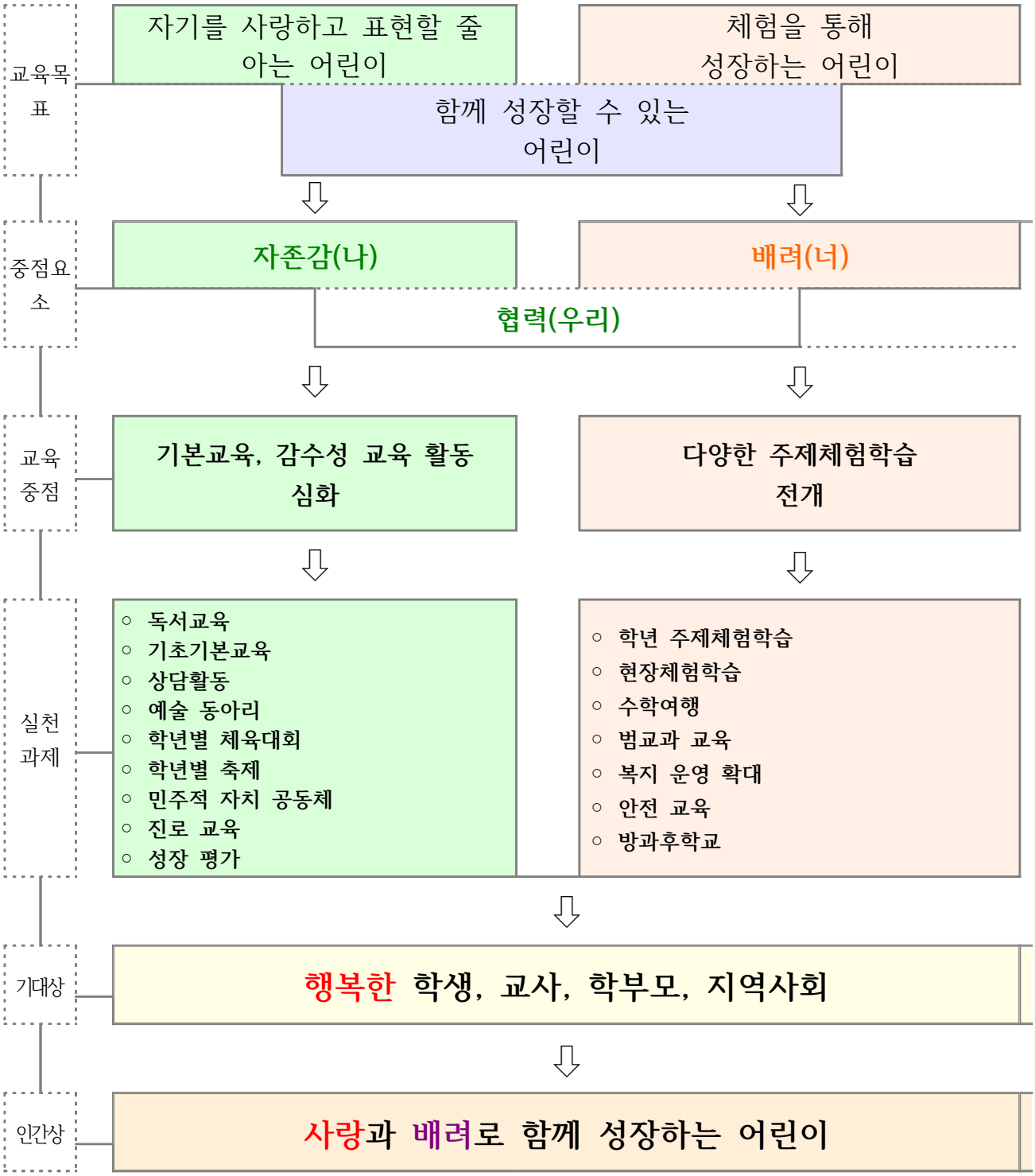

나. 교육중점활동

예술 동아리 활동 심화

○ 예술 강사 활용 수업(3~6학년 국악) ○ 학생동아리 활동(4~11월)	○ 학년 축제 주간 운영(11.1~11.10) ○ 방과후 예술 부서 개설

다양한 주제 체험학습 확대

○ 학년 주제 체험학습 - 2, 5학년 안전체험(10.26) - 3, 4학년 생존 수영 교육(10시간) - 학년별 주제체험 학습(연중) - 6학년 테마식현장체험학습(6.26~6.27)	○ 학년별 장·단기 프로젝트 학습(연중) ○ 교과관련 현장체험학습 1학기: 4월 중, 1~5학년 2학기: 10월 중, 1~6학년

민주적 자치 공동체 활성화

○ 학급, 전교어린이회 조직(3월)	○ 학급, 전교어린이회의 활성화 - 학생 자치실 운영

참된 인성교육으로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 학년체육대회주간(5월) ○ 학년축제운영주간(11월) ○ 안전교육(7영역, 1~6학년 51시간) ○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프로그램 ○ 집단 프로그램 ○ 지속적인 상담활동 ○ 친구사랑주간 운영(3월/9월)	○ 학교·가정폭력예방교육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장애이해교육 및 인권교육 ○ 에너지절약교육 ○ 다문화교육 ○ 통일교육 ○ 양성평등교육 ○ 성교육(성폭력 예방) ○ 저작권교육 ○ 진로교육 ○ 방과후학교(10개 부서) ○ 돌봄교실(오후반 2개)

다. 학사일정

2023학년도 1학기 [2023.3.1.~2023.8.2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수	삼일절	1	토		1	월	체육대회주간 (5.1~5.4)	1	목		1	토		1	화	
2	목	시업식 입학식	2	일		2	화		2	금		2	일		2	수	
3	금		3	월	3학년 생존수영교육 (4.3~4.7/오전,오후)	3	수		3	토		3	월	성교육주간 (7.3~7.7,전학년)	3	목	
4	토		4	화		4	목		4	일		4	화		4	금	
5	일		5	수		5	금	어린이날	5	월	재량휴업일	5	수		5	토	
6	월		6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6	토		6	화	현충일	6	목		6	일	
7	화		7	금		7	일		7	수		7	금		7	월	
8	수		8	토		8	월		8	목		8	토		8	화	
9	목		9	일		9	화		9	금		9	일		9	수	
10	금	학급어린이회조직 (4,5,6학년)	10	월	4학년 생존수영교육 (4.10~4.14/오전,오후) 5학년 외국어교육센터 (4.10~4.14)	10	수	안전체험학습(5학년)	10	토		10	월		10	목	
11	토		11	화		11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11	일		11	화		11	금	
12	일		12	수		12	금		12	월		12	수		12	토	
13	월	1학기 친구사랑주간 (3.13~3.17,전학년)	13	목		13	토		13	화		13	목		13	일	
14	화		14	금		14	일		14	수		14	금		14	월	
15	수		15	토		15	월		15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15	토		15	화	광복절
16	목		16	일		16	화		16	금		16	일		16	수	
17	금		17	월	기후변화교육주간 (4.17~4.21,전학년) 장애공감주간 (4.17~4.21,전학년)	17	수	소방안전교육	17	토		17	월		17	목	
18	토		18	화	봄 현장체험학습 (4학년)	18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18	일		18	화		18	금	
19	일		19	수		19	금		19	월	통일교육주간 (6.19~6.23)	19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19	토	
20	월		20	목	봄 현장체험학습 (1,2,3학년)	20	토		20	화		20	목		20	일	
21	화	진단평가 교육과정설명회	21	금	봄 현장체험학습 (5학년)	21	일		21	수		21	금		21	월	
22	수		22	토		22	월		22	목		22	토		22	화	
23	목		23	일		23	화		23	금		23	일		23	수	여름개학식
24	금	전교어린이회조직 (4,5,6학년)	24	월		24	수	안전체험학습(2학년)	24	토		24	월		24	목	
25	토		25	화		25	목		25	일		25	화	여름방학식	25	금	
26	일		26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26	금	학부모공개수업	26	월	테마식현장체험학습(6학년/6.26~27)	26	수		26	토	
27	월	학부모 상담주간 (3.27~3.31)	27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27	토	부처님오신날	27	화		27	목		27	일	
28	화		28	금		28	일		28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28	금		28	월	
29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29	토		29	월	재량휴업일	29	목		29	토		29	화	
30	목	동아리조직 (4,5,6학년)	30	일		30	화	흡연예방 및 약물오남용교육주간 (5.30~6.2,전학년)	30	금		30	일		30	수	
31	금					31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31	월		31	목	
수업일		22			20			21			20			17			7

2023학년도 2학기 [2023.8.23.~2024.2.10.]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금		1	일		1	수	학년축제주간 (11.1~11.10, 전학년)	1	금		1	월	신정	1	목	겨울개학식
2	토		2	월	재량휴업일	2	목		2	토		2	화		2	금	
3	일		3	화	개천절	3	금		3	일		3	수		3	토	
4	월	2학기 친구사랑주간 (9.4~9.8, 전학년)	4	수		4	토		4	월		4	목		4	일	
5	화		5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5	일		5	화		5	금		5	월	
6	수		6	금		6	월		6	수		6	토		6	화	
7	목		7	토		7	화		7	목		7	일		7	수	종업식 졸업식
8	금		8	일		8	수		8	금		8	월		8	목	
9	토		9	월	한글날	9	목		9	토		9	화		9	금	설연휴
10	일		10	화		10	금		10	일		10	수		10	토	설날
11	월		11	수		11	토		11	월		11	목		11	일	
12	화		12	목	가을현장체험학습 (1,2,3학년)	12	일		12	화		12	금		12	월	대체공휴일
13	수		13	금	가을 현장체험학습 (4,5,6학년)	13	월		13	수		13	토		13	화	
14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14	토		14	화		14	목		14	일		14	수	
15	금		15	일		15	수		15	금		15	월		15	목	
16	토		16	월		16	목		16	토		16	화		16	금	
17	일		17	화		17	금		17	일		17	수		17	토	
18	월	학부모상담주간 (9.18~9.22) 장애공감주간 (9.18~9.22, 전학년)	18	수	합동소방훈련	18	토		18	월		18	목		18	일	
19	화		19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19	일		19	화		19	금		19	월	
20	수		20	금		20	월		20	수		20	토		20	화	
21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21	토		21	화		21	목		21	일		21	수	
22	금		22	일		22	수		22	금		22	월		22	목	
23	토		23	월	독도교육주간	23	목		23	토		23	화		23	금	
24	일		24	화		24	금		24	일		24	수		24	토	
25	월		25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25	토		25	월	성탄절	25	목		25	일	
26	화		26	목	동아리활동 (4,5,6학년)	26	일		26	화		26	금		26	월	
27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27	금		27	월		27	수	겨울방학식	27	토		27	화	
28	목	추석연휴	28	토		28	화		28	목		28	일		28	수	
29	금	추석	29	일		29	수	학급어린이회의 (4,5,6학년)	29	금		29	월		29	목	
30	토	추석연휴	30	월	기후변화교육주간 (10.30~11.3, 전학년)	30	목		30	토		30	화				
			31	화					31	일		31	수				
수업일		19			19			22			18			0			5

※ 수업일수 : 1학기 100일, 2학기 90일 계:190일

2.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금지)

가.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공교육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미리 배워 와야 하는 수업이나 시험출제를 막아 초·중·고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공교육정상화법 세부 추진 내용

1)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 학교 실시

2)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3)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4)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라. 주요 질문과 응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법의 이해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한 학기, 학년 또는 학교급별 교육내용을 넘어서는 것을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3. 참학력 신장을 위한 '초등성장평가제' 운영

가. 초등성장평가제

단편적인 지식암기와 결과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닌 수업 속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

※ 참학력 : 지식위주의 학력을 넘어서 지식, 가치와 태도,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 [전라북도교육청 학력관]

나. 배경 및 필요성

1)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급격한 변화

2) 세계적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지식<역량)

3) 학습의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참학력 신장을 위한 평가 필요

4) 교육흐름의 변화 속에서 초등성장평가제의 내실 있는 실천 (2016년 시행, 2018년 정착)

5) 기존 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기존 평가	초등 성장평가
서열, 결과중심 평가	결과만이 아닌 과정중심 평가
획일화된 사고 강조	다양한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강조
단순 암기 위주 평가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지식 전달의 교사중심 수업	배움과 성장의 학생중심수업

6) 추진 근거

2009개정교육과정	학습의 과정으로서 평가
2015교육과정총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화
교육부 평가방향	○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 평가 ○ 학교결과를 통한 수업 질 개선 ○ 교과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 활용

다. 실시 방법

일제평가 형식의 중간·기말고사 폐지 ⇨

○ 수업 안에서 수시로 평가가 이뤄지며 교실마다 평가의 모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 교과특성 반영한 수행평가 내실화
○ 학생 성장을 담은 평가 결과 알림

라. 평가 준비

학생	학부모
다양한 해결방법모색/ 성실한 수업참여/다양한 독서활동/표현력	선생님과 소통/아이와 대화/성장에 도움
선생님마다 지도내용과 방법이 다르고 수업 안에서 평가가 수시로 이뤄지므로 평소 학교 공부에 충실하기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선생님과 부모님의 소통이 중요하며, 자녀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4.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가. 방과후학교 부서별 활동

순	부서명	활동일	활동반	해당학년	운영요일, 시간	수강료(원)	장소
1	컴퓨터	수,금 (40분)			<수,금>	27,000 (교재비 별도)	컴퓨터실 (본관3층)
			A	1~3학년	13:00~13:40		
			B	3~4학년	13:45~14:25		
			C	4~6학년	14:35~15:15		
			D	통합	15:20~16:00		
2	영어부	월,수,금 (40분)			<월.수,금>	32,000 (교재비 별도)	영어실 (별관4층)
			A	1~2학년	13:00~13:40		
			B	3학년	13:45~14:25		
			C	4학년	14:35~15:15		
			D	5~6학년	15:20~16:00		
3	그리기	화,목 (40분)			<화,목>	27,000 (재료비 별도)	그리기실 (토탈공예별 관4층)
			A	1~2학년	13:00~13:40		
			B	3~4학년	13:45~14:25		
			C	통합	14:35~15:15		
			D	통합	15:20~16:00		
4	토탈 공예	월,수 (40분)			<월,수>	27,000 (재료비 별도)	토탈공예실 (그리기실별 관4층)
			A	1~2학년	13:00~13:40		
			B	1~3학년	13:45~14:25		
			C	3~6학년	14:35~15:15		
			D	통합	15:20~16:00		
5	한자	화,목 (40분)			<화,목>	27,000 (교재비 별도)	한자실 (보건교육실 별관3층)
			A	1~2학년	13:00~13:40		
			B	3~4학년	13:45~14:25		
			C	통합	14:35~15:15		
			D	통합	15:20~16:00		
6	방송 댄스	수,금 (40분)			<수,금>	27,000	방송댄스실 (별관4층)
			A	1~2학년	13:00~13:40		
			B	2~3학년	13:45~14:25		
			C	4~6학년	14:35~15:15		
			D	통합	15:20~16:00		
7	창의 과학	월,금 (40분)			<월,금>	27,000 (재료비 별도)	창의과학실 (주산암산실 별관4층)
			A	1~2학년	13:00~13:40		
			B	1~3학년	13:45~14:25		
			C	4~6학년	14:35~15:15		
			D	통합	15:20~16:00		
8	바이 올린	화,목 (40분)			<화,목>	27,000 (교재비 별도)	바이올린실 (별관4층)
			A	통합	13:00~13:40		
			B	통합	13:45~14:25		
			C	통합	14:35~15:15		
9	주산 암산	화,목 (40분)			<화,목>	27,000 (교재비 별도)	주산암산 (창의과학별 관4층)
			A	1~2학년	13:00~13:40		
			B	통합	13:45~14:25		
			C	통합	14:35~15:15		
10	탁구	화,목 (40분)			<화,목>	27,000	탁구실 (본관3층)
			A	통합	13:00~13:40		
			B	통합	13:45~14:25		
			C	통합	14:35~15:15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1) 운영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12개월)

2) 지원 대상

순위	구분	내용
1	우선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2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	학교장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탈락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함(사유 자세히)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4	다자녀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 다문화 각각 지원 **-다자녀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함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3) 지원영역 : 수강료 및 교재비

4) 지원금액 : **2023학년도 1인당 연간 60만원(적극적 참여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 불가**

- 수강료와 교재비를 포함하여 연간 60만원이 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함

- 연간 60만원이 넘어서는 경우 교재비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도록 함

- 자유수강권에 선정된 학생은 성실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지도 바라며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자유수강권 수업을 포기할 경우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짐.

다. 돌봄교실

1) 운영기간 : 2023년 1-2학년 개학일 ~ 2024년 2월
(방학 중에도 운영)

2) 운영시간

가) 학기 중

- 평일 오후반 (2개 반) 12:30 ~ 16:30

나) 방학 중

- 오전반 : 09:00 ~ 13:00
- 종일반 : 09:00 ~ 16:00

3) 대상

가)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구성

나) **교육비지원대상자 중 맞벌이 가정, 교육비지원대상자, 맞벌이 가정 순으로 선정**

4) 프로그램 운영

- 돌봄교실(오후반) : 교과 보충지도, 독후활동, 미술창의활동, 교구 · 놀이활동, 체육활동 등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가. 운영목표

- ◦ 학생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성장 지원
- ◦ 학교 교육복지 문화 조성
-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복지 운영
- ◦ 학교-지역 교육복지공동체 조성

나. 사업별 추진내용

프로그램	세부내용
학생별 특성 및 욕구 파악	**(신입생)** ◦대상: 법정저소득 학생 및 담임추천 학생 ◦자료: 학생이해자료(담임용) ◦학생면담을 통한 기초조사 및 욕구 조사 -도구: 간단한 자기소개지 활용 -시간: 방과후(돌봄 학생) 시간, 점심시간 ◦가정방문(학부모 면담, 가정환경 파악) -법정 저소득학생→담임추천학생 순으로 방문 (가정방문 거부시 전화상담으로 대체) **(재학생)** ◦대상 -2~6학년 대상학생(집중, 우선지원 학생) 중 정보파악이 미흡한 학생 -대상학생으로 새롭게 선정된 학생, 전입학생, 담임추천학생(기존학생 중 위생,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 새로운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학생면담(욕구파악) -자기소개지, 문장완성검사지 활용 ◦담임면담 및 가정방문 -집중지원→우선지원→지원학생→담임추천순으로 실시
지원 순위 결정 및 학생 특성별 분류	**◦동학년 협의회** -1차(5월): 대상학생 지원순위 최종 확정 및 학생 특성별 분류,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2차(11월): 모니터링 및 평가(지원순위 조정, 대상학생 추가, 삭제, 차기년도 계획 수립) **◦사례관리팀** - 집중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개입 계획 협의
가정 방문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 가정방문 대상학생 선정 -학생 중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정 상시운영 ◦가정방문 대상학생별 담임, 교감, 교육복지담당교사, 지역기관 담당자와 동행
Finding 프로그램	**◦몸으로 말해요(1학년)** -1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전문강사와 담임, 교육복지사가 함께 참여하여 또래관계 및 사회성 발달 정도,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파악 ※집단상담(동작테라피), 사제멘토링, 행복동행과 연계
	◦마음을 그려요(2학년) -2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전문강사와 담임, 교육복지사가 함께 참여하여 소근육 활동 및 인지능력 발달 정도,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파악 ※집단상담(미술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사제멘토링, 행복동행과 연계
	◦도란도란 이야기방(1-6학년) -교육복지대상학생 1:1 면담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활용

	(담임선생님과 협의 후 수업 중 실시 가능)
개인상담	◦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지지 필요 학생 ◦학습의욕이 없으며 또래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친구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려는 학생 ◦학생의 가정상황과 관련하여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학생 ◦인지적, 정서적 발달수준이 낮아 산만하고 학교수업이 어려운 학생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
마음 놀이터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집단활동 -몸의 움직임을 통해 정서적 감정을 표현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성 및 관계형성을 돕고자 함
언어치료	◦낮은 어휘능력 및 낮은 언어이해능력으로 인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
그림책 놀이코칭	◦이해력 부족으로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소집단 프로그램 운영 -이해하기 쉬운 그림동화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한 편안함 제공 -동화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적 놀이활동으로 이해력 증진 및 동화속 인물 마음을 나누는 활동으로 자기 표현력 향상
‘행복교감’ 방학교실	-여름방학 중 가정환경으로 인해 여행 또는 체험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적 기회 제공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제별 전문적 활동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경험함 -굿네이버스 기관과 연계한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마음톡톡’ 자기표현	◦자기표현 및 자기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점이 있는 학생들의 욕구반영으로 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봄으로써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
‘생각톡톡’ 미디어 바로알자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기감정 다스리기 및 표현하기 -분노조절 및 자기통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능력 배우기 -미디어 및 스마트 폰 과몰입 예방교육 및 원예활동
‘슬기로운 주말’ 여가생활	-욕구는 있으나 가정환경의 열악으로 진로에 대한 제한적 상황이 있는 학생 -고학년군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주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선용에 대한 긍적적인 경험 기회 제공
사제 멘토링	◦집중지원, 우선지원 학생에 대한 학교적응력 향상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1:1 또는 1:2 담임교사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통한 정서적지지 ◦상담, 학습(교과지도), 체험활동, 또래간 관계형성 등의 활동
Oh!, my family 가족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가족응집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 및 기관의 도움으로 가족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가족체험: 가족별 상황과 욕구에 맞춰 제공 -행복한 가족 나들이 1박2일 가족여행으로 따뜻한 가족간 추억담기 -가족상담: 전문적인 상담기관과 연계 학교, 상담기관, 가정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족별 시간과 상황에 맞춰 진행
자발적 동아리	◦재능키움 동아리 -동아리명: **밴드동아리** -동아리지도: 외부강사

		-대상: 5~6학년 14명 ◦에너지 발산 동아리 -동아리명: 댄스동아리, 자원봉사 동아리 -동아리지도: 내부교사 -대상: 4~5학년 22명
개별지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지원이 가정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례관리팀 회의를 통해 지원 (예: 안경, 병원진료, 계절의류 등)
사례회의		**◦교내사례관리협의회** -3월: 집중지원학생 7명에 대한 개입 내용 공유 및 추가 개입내용 협의(우선지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및 추가개입 협의) -5월: 신입생(집중지원학생)에 대한 사례개입 계획 협의 -9월: 모니터링 -12월: 개입평가 및 차기계획 협의 **◦교외사례관리협의회** -긴급사안 발생시 수시로 실시
긴급지원		◦의식주와 관련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 일시적 긴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사례관리팀 회의를 통해 지원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육내용 과 연계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나눔, 배려, 봉사,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 등 교육복지 가치를 심어주고 학교 내 학년별 교육복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단원과 연계한 주제체험학습을 학년 및 학급단위로 자유롭게 계획 실시함
행복동행		◦교육복지 중심 학급문화개선을 위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학급내 교육복지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담임교사가 대상학생 및 학급학생 일부 또는 학급전체의 학생들과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 진로, 봉사 등 소통과 공감의 기회 제공 ◦교사, 학생, 가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동행 (학생-학생, 교사-학생, 교사-가정)
성장학급 지원		◦스마트폰 게임 예방지원(1~2학년) -동학년 협의회시 학년 특성 반영한 학급지원 ◦언어문화개선 -학급내 거친말과 행동들을 보이는 대상학생이 있는 학급, 또는 원활한 또래관계형성이 필요한 학년 -언어문화개선 학급교육 4회기
협의회	사례관리협의회	**◦교내사례관리협의회** -3월: 집중지원학생 7명에 대한 개입 내용 공유 및 추가 개입내용 협의(우선지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및 추가개입 협의) -5월: 신입생(집중지원학생)에 대한 사례개입 계획 협의 -9월: 모니터링 -12월: 개입평가 및 차기계획 협의 **◦교외사례관리협의회** -긴급사안 발생시 수시로 실시
	학년협의회	◦동학년 협의회(연 2회) -1차(5월): 대상학생 지원순위 최종 확정 및 학생특성별 분류,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2차(7월): 중간모니터링 -3차(11월): 모니터링 및 평가(지원순위 조정, 대상학생 추가, 삭제, 차기년도 계획 수립)

6. 교육환경 개선 및 주요 사업 실적

가. 2022학년도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소 요 예 산	비 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51,579	
돌봄교실 운영	81,739	
교육복지 사업 운영	46,764	
저소득층 방과후 지원	57,423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2,965	
학습준비물 지원	11,240	
맞춤형 학습 지원	9,000	
도서구입 및 도서관 운영	9,842	
당직관리 및 학교청소관리	64,431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9,822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7,000	
코로나19 방역 운영	29,373	
학교 소규모 수선비	9,038	
교수학습자료지원실 구축	30,000	
영어체험실 구축	30,000	
상담실 구축	20,000	
과학실 구축	60,476	
학생자치복합공간 구축	40,000	
교육복지실	25,000	
학교 통학로 개선 공사	140,000	

나. 2023학년도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소 요 예 산	비 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60,433	
돌봄교실 운영	추후 확정	
교육복지 사업 운영	36,200	
저소득층 방과후 지원	추후 확정	
수학여행 지원	7,650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3,060	
학습준비물 지원	10,800	
도서구입 및 도서관 운영	11,454	
맞춤형 학습 지원	추후 확정	
당직관리 및 학교청소관리	47,525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7,500	
학교 소규모 수선비	7,000	

Ⅲ.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1항-

2.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 임기: 교원은 근무기간, 학부모는 자녀 재학기간
- 전담기구 개최 정족수는 별도의 규정 없음
-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 학교 간 폭력 발생 시 어느 한 곳이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로 회부해야 함

3.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

- 목적: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학교폭력 재발방지 및 공동체성 회복
- 대상: 관련 학생 측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

☆ 경미한 사안 기준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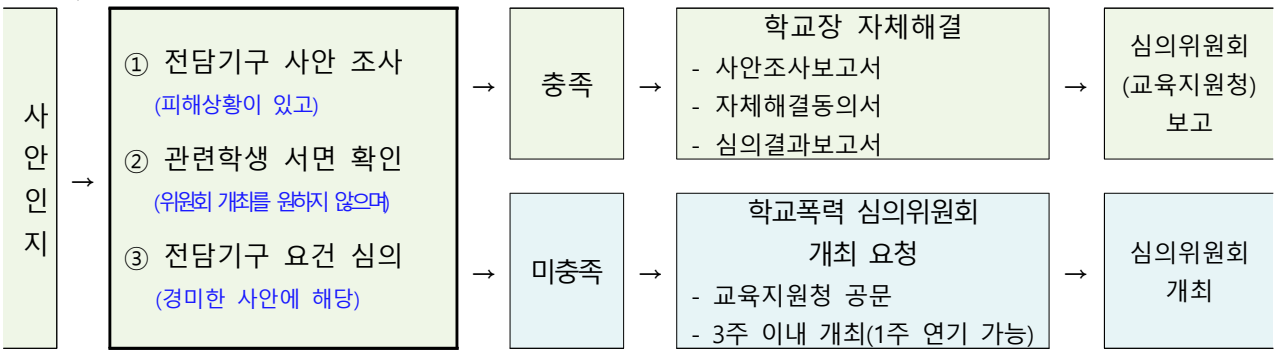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면담, 상담, 목격, 신고, 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안 인지(접수)

학교

초기대응

- 접수대장기록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통보
- 중대사안 유선 보고
- 교육청사안보고

전담기구사안조사

회복조정 신청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2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교육지원청

- 사안접수(파악)
- 소위원회 배정
- 소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위원장에게 보고
- 결정통보(서면)
- 조치이행 요청

조치이행 →
- 피·가해학생 조치 이행
- 생활기록부 기재
- 조치 이행 결과 보고

조치불복 →
- 행정심판 청구(90일 이내)
- 생활기록부 기재
-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조치이행 유보

회의 도중 당사자 모두의 동의 하에 회복조정이 신청된 경우 → 조치유보 →
- 회복조정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닌 경우 (오인신고, 안전사고 등)

- 동의 → 담임교사 해결 사안처리
- 미동의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인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정 >

※ 2주 이내 결정, 필요한 경우 1주 연장 가능

✓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미 개최 의사 서면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 요건 심의

①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요건 충족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 사안조사보고서
- 자체해결동의서
- 심의결과보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라 하더라도
-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을 미 이행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요건 미 충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학생생활교육 및 학부모 교육

Ⅰ 필요성

○ 최근 청소년 유해 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변종 '룸카페' 운영 사례 발생 증가
○ 청소년의 과도한 애정 행각을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
○ 청소년의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교육 필요
○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과 연계한 학생생활교육 강화 필요

Ⅱ 관련 기사

기사 제목	주소(URL)
청소년 탈선 장소 된 룸카페… "단속 기준 마련해야"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2/03/21/O2L2P37NMFBIVPMP2CZMTWXVU4/
청소년 탈선 온상 지목… '룸카페'와의 전쟁 개시	https://m.newspic.kr/view.html?nid=2023021017081521283&pn=576&cp=B8VkA04I&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30210170815212 83&utm_source=np220119B8VkA04I#_PA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성인물까지‥변종 룸카페 적발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9656_36126.html
전북도,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152693

4.성비위(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매매) 예방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매매)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청소년 성폭력은 학생들의 집, 학교 등 학생들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 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 행동은?

-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로 보내기
-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언급하기
-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지기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

1)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3)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4)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5)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가르쳐줍니다.

6)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 제안이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7)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8)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다. 성폭력 후 대처 및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성폭력을 겪었을 때에는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상담기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한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 증거물을 씻거나 없애지 말고 봉투에 넣어 잘 보관합니다.

-입었던 옷과 속옷, 가해자의 증거물로 챙길 수 있는 것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 및 증거 채취를 합니다.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1366문의)이나 ONE-STOP지원센터를 이용

▶ 의학적, 심리적, 법률적 조취를 취합니다.

- 신고전화 : 관할경찰서 국번없이 112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성폭력 피해 관련 긴급 위기상담 및 신고전화
-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후 사이버 범죄신고
- 성범죄 알림e 활용: 가정 및 학교 근처 성범죄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

- 전북서부해바라기 센터 :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1층, ☎ 063-859-1375
- 익산성폭력 상담소 : ☎ 063-834-1366

라.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촬영이나 소비(불법촬영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를 말합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1) 피해 알아차리기

2) 상담하기 "말해도 괜찮아"

3) 신고하기: 도와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등)

4) 디지털범죄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곳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긴급전화 1366

마. 성매매 예방

▶ 청소년 성매매 제대로 알기

청소년 성매매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위해 금전이나 다른 대가로 유인하여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에는 보통 5가지 경로가 있다. (가출, 인신매매, 사이버공간, 친구의 유혹, 전단지)

▶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사이버 공간이다.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방을 열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 제의가 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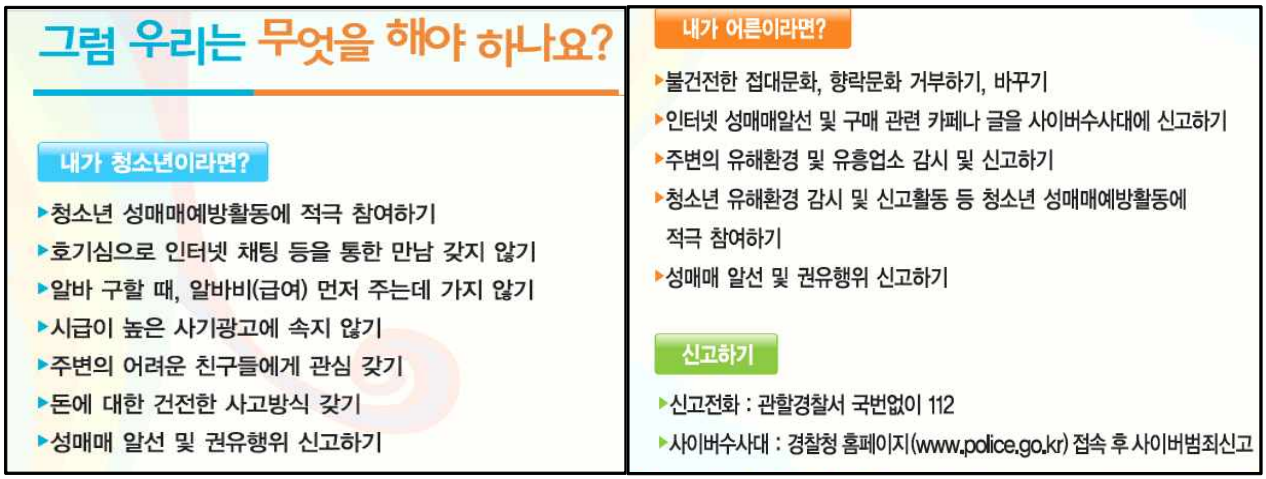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가. 아동인권이란?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UN아동 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제3조

나. 아동의 4가지 권리

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라. 아동학대범죄란?

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2)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3)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 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 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 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 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마. 아동학대의 후유증

바.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1)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2)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3)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4)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내

1) 아동학대치사(제4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학대중상해(5조) : 3년 이상의 징역

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1)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 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2)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
3)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4)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Ⅳ. 인권 교육

1. 인권과 인권교육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등의 모두를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인종과 국가, 민족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과 평등 그리고 우호의 증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를 비롯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등의 공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제도, 가족, 매스미디어 등 비공식 학습의 모든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3.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자녀 양육 · 교육에 있어서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4. 가정에서의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가. 학교전체 ·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역구역입니다.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흡연이 금지**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청소년 흡연과 건강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벤젠, 카드뮴 등과 같은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69종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4,000여종의 독성 및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다른 약물 중독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담배에 일찍 노출될수록 중독 위험과 각종 질병, 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다. 흡연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1)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3) 어른이 되면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4) 자녀들과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라. 약물 오남용 예방

(1)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하기

- 약물의 올바른 복용법(용량, 시간, 보관)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과감하게 폐기합니다.

(2) 마약류등 중독제 남용 예방(마약류, 술, 담배, 카페인, 흡입제의 중독)

○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 중독제를 권하는 친구들의 만남과 모임은 피하기
- 중독제의 해로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처하기

○ **중독에 대처하는 방법**

-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이온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삼가
- 중독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주위를 환기

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가.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1)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2)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지,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Ⅴ. 안전교육

1. 목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전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 운영방침

가. 안전교육은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기준으로 7개 영역, 51차시 이상으로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년(군)					
			1-2		3-4		5-6	
생활 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 제품안전 / 실험실습안전	12	12	25	17	12	10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교통 안전	보행자안전	교통 표지판구별하기 / 길을 건너는 / 보행안전	11	11	6	12	11	7
	자전거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 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사고의 원인 / 자동차사고 예방법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폭력 신변 안전	학교폭력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신체, 금품갈취, 강요) /심리 정서적 폭력 / 사이버폭력	8	18	7	12	8	15
	성폭력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 성매매 예방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약물 유해물질, 인터넷 중독	약물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폐해 및 예방 /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10	10	4	11	10	9
	사이버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 스마트폰 중독						
재난 안전	화재	화재발생 /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6	11	5	6	6	6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시 대처요령						
실험실습 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 직업안전 문화	2	2	3	2	2	4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 정리정돈 /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2	2	4	4	2	3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 지혈 및 상처처치						
계			51	66	54	64	51	54

나. 학교 행사활동(민방위훈련, 재난한국훈련, 화재대피훈련 포함)과 보건교육과정(성폭력, 응급처치, 학교폭력,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에서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안전교육시간에 포함시키고, 그 외 시간은 학급교육과정 연간지도계획에 편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애 주기별 체험형 안전교육(2·5학년, 전북119안전체험관), 생존수영교육(3·4학년: 10시간), 야외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실시하기 전에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Ⅵ. 학생 출결 관련 규정 안내

1. 출석 인정 결석

가. 천재지변

나. 법정전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의사진단서 학교에 제출

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1)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3)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기·경연대회 참석,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개인교환학습 : 1개월 이내
- 단체교환학습 : 2주 이내
- 교외체험학습 : 15일 이내(연속신청 가능일수 10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마. 경조사로 인한 결석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2.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나. 기타 결석

-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무단 결석

- 질병 결석 및 기타 결석 이외의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

Ⅶ.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불법찬조금 근절

Ⅰ.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의 개념

1. 청탁금지법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교직원) 및 **제공한 자(학부모 등)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학생·학부모와 담임교사**(학생 수업 교사 등 포함)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
- o 학부모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o 교사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징계

2. 불법찬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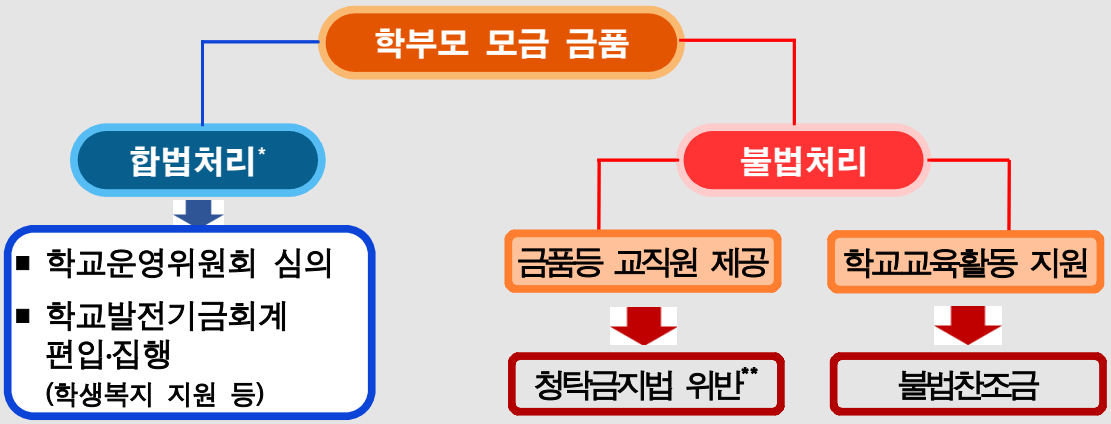

* 합법처리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심의.의결을 통한 모금금품 또는 자발적 조성금품
(학생복지 지원 및 교육활동비 지원 등의 조성 가능, 교직원복지비 명목으로 조성 불가)

** 청탁금지법 위반 : 학교발전기금 조성 목적과 합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학부모 모금금품이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수수한 교직원 및 제공한 학부모 모두 처벌 : 2~5배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교직원-징계 의무)

*** 불법찬조금 : 학부모 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Ⅱ.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불법찬조금 처분 사례

○ 2020년도 **교육청 사례

구분	사건내용	수사·재판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금품 수수)	○ 2020년 2월 경 학생상담을 요청한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 후, 쇼핑백을 놓고 감. ○ 교사가 쇼핑백(현금20만원)을 확인하고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은 지방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교사 자진신고 ○ 학부모: 과태료 부과 (2배, 40만원)
	○ 2020년 3월 경 학부모가 교사에게 휴대폰 문자이미지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을 보냄 ○ 교사는 문자 확인 후 즉시 이미지 자료 확보 및 삭제처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은 지방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휴대폰 문자 이미지는 취소나 환불 처리가 불가하여 삭제처리	○ 교사 자진신고 ○ 학부모: 과태료 부과요청
	○ 2020년 6월 학부모가 돌봄전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9,800원 상당)을 보냄 ○ 돌봄전담사는 카카오톡을 확인 후 즉시 취소/환불처리,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 청탁방지담당관은 지방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돌봄전담사 자진신고 ○ 학부모:과태료 부과 요청
	○ 교사A는 학부모들로부터 명품가방, 상품권, 본인 축의금 등 약 2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 교사: 징계요청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요청 예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직자(교직원)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의무사항), 만약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됨		
불법 찬조금 사례	○ △△고 야구부 감독 B는 야구부 학부모 24명이 1인당 325천원씩 모금한 총 780만원을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본인(감독 A)과 코치들의 성과금 명목으로 사용	○ 부산지방검찰청 고발 ○ 관련자 징계요청 및 수사 중

☐ 불법찬조금(촌지) 등 부패 관련사항 신고

◇ 부패신고 문의처

- 이리동북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교감 전은하 ☎ 063-857-1281

Ⅷ. 교권보호

교권의 개념

- 교권은 교사의 권리(權利) 또는 교사의 권위(權威)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 교권을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

교권 침해의 개념

-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등에 의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나 권위가 부당하게 간섭 받거나 침해되는 것

교권의 개념

- 교권은 교사의 권리(權利) 또는 교사의 권위(權威)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 교권을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

가. 응급 상황인 경우 119 신고,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2 신고

나. 교장 및 교감에게 상황 보고

다. 학교 현장의 안정화 조치

라. 관련 교원의 안정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 작성 안내

마. 관련학생의 안정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Q&A

Q.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사안 처리의 방향 및 원칙이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하였을 때, 관용적인 태도 지양,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은폐 금지, 상급 기관 의무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고를 받는 관할청에서는 보고 결과를 해당 학교나 학교의 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교원지위법」 제16조)

1.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정 교원지위법 이전 <시행일(2019. 10. 17.) 이전>	개정 교원지위법 이후 <시행일 (2019. 10. 17.)>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 제17조
가능한 조치	①학교 내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④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 · 장애 여부와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처리 절차

3. 학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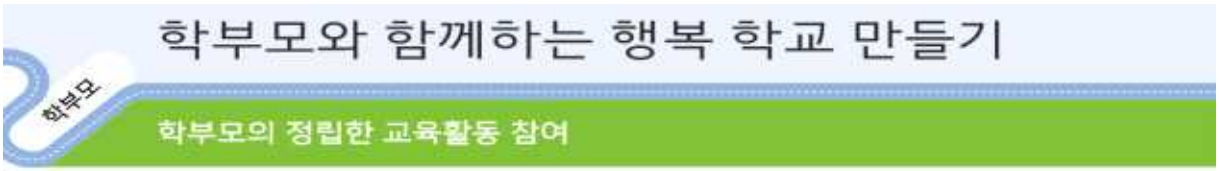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 학교알리미 활용
- 학교 운영위원회 활용
- 학부모회 참여
-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 공개 수업 참여

○ 학부모의 학교방문 절차